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1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	2
※ 참고자료 1	8
※ 참고자료 2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17.

다. 회부연월일 : 2025. 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Ⅲ. 검토의견

1.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가. 개정안 요지

-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정보통신융합등¹⁾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²⁾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임시허가) ① ~ ⑥ (생략)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임시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기본원칙)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u>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⑧ ~ ⑬ (생략)	----- ----- ----- ----- ----- ----- ----- ----- - <u><단서 삭제></u> ⑧ ~ ⑬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ICT 규제샌드박스³⁾ 제도의 하나인 임시허가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관한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불명확·불합리한 경우,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법령 정비에 앞서 임시로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임.

3)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함(참고자료 1 참조).

- 현행법⁴⁾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신규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 연장된 유효기간(최대 4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

4)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시허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② 관계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15일 이내에 완료
 2.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⑨ ~ ⑬ (생략)

주하고 있으며,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제37조제7항 단서).

○ 개정안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이는 많은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중단되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실제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⁵⁾의 경우 2019년 임시허가 이래 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나 「도로교통법」 개정 지연으로 중단 위기를 경험하였고 이후 해당 법률을 개정·시행하였음⁶⁾.

○ 또한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관련 6개 법⁷⁾(참고자료 2 참조)은 관계기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하

5)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함.

6)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020년 6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3일까지였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은 2024년 7월 31일임.

7)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④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⑥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환경부)

고, 만약 유효기간 내에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개 법은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임.⁸⁾

○ 한편 현행법의 단서 조항은 개정 당시(2021. 6. 8.)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⁹⁾ 따라 규정된 것임.

- 즉 법률의 정비를 의무화하고 그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것은 유효기간을 정한 임시허가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여러 번의 숙의를 통해 수정 신설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6개 법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에만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8)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임시허가 지정 사례가 없어 개정법 시행 및 첫 임시허가 사례 지정 이후 해당 조문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9)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21인)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0.09.24.)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1.02.19.)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1.03.23.)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0.05.06.)

-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법률 개정 내용, 입법 시기 등은 국회가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단서조항이 유지될 경우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국회의 토론 및 숙고 기간 등에 제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¹⁰⁾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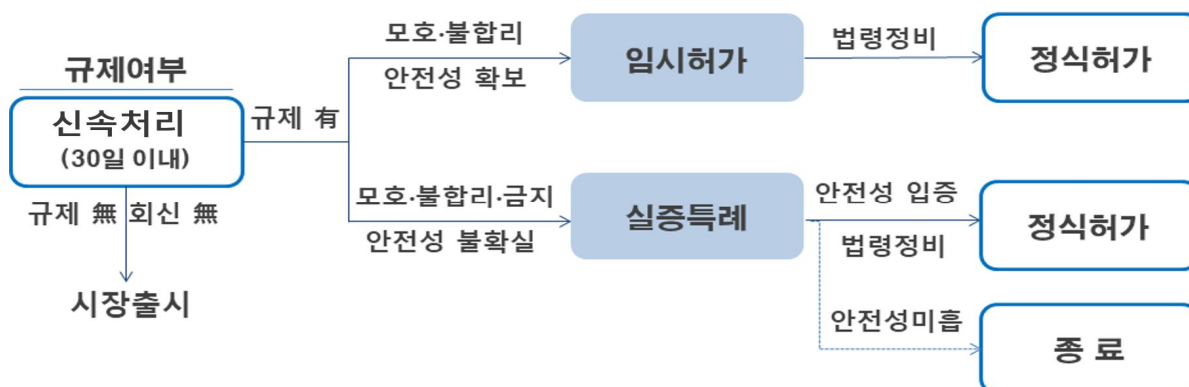
10) 임시허가는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로 허가를 내주고 이후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규제부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동안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법률 개정예 최대 유효기간인 4년(2+2년)이 초과될 수 있음.

※ 참고자료 1: ICT 규제샌드박스¹¹⁾

□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하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신속처리(확인)^①, 임시허가^②, 실증특례^③가 있음.

- ①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
- ②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 ③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규제샌드박스 운영절차 >



1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자료 2: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관련 조문(6개 법률)

법률명 (소관부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관련 조문 내용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과기정통부)	제37조(임시허가)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u>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기정통부)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⑩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u>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부)	제10조의6(임시허가)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기부)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⑨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환경부)	제33조(임시허가)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